

의안번호	2213593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12.8.
추 계 번호	25B557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중 필로티 구조의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5억원, 2031년 135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649억원(연평균 13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비: 향후 5년 동안 325억원(연평균 65억원) 이상 소요예상
- 지방비: 향후 5년 동안 325억원(연평균 65억원) 이상 소요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125	127	130	132	135	649	130
	국비	62	64	65	66	68	325	65
	지방비	62	64	65	66	68	325	65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2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2제1항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 (제3호)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의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 (추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보강 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¹⁾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²⁾ 적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한다’ 2025.9.3.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9.)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2.0	2.0	2.0	2.0	2.0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방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으로 연도별 지원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 (지원대상)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물량을 다음과 같이 추산함
 - (지원기준)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필로티 구조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면서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정함
 - 필로티 주차장 면적,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선정
 - (지원물량)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11.6만동이며, 개정안에 따른 지원 물량은 화재취약요소 및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3만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도별 지원물량은 추계기간 균분하여 연간 6,000동으로 가정함

[표 2] 가연 외장재 설치 필로티 공동주택 현황

구분		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타
가연 외장재 설치된 필로티	(만동)	11.6 (100 %)	3 (25.9)	8.3 (71.6)	0.3 (2.6)	0.01 (0.1)
	(만세대)	308.0 (100 %)	216.8 (70.4)	84.1 (27.3)	6.7 (2.2)	0.4 (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지원단가) 건물 1개 동당 200만원 지원(국비와 지방비 5:5)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국토교통부는 대상 건물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검토중이며, 평균 2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
 - (지원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로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소방설비 지원(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아크차단기) 전기불꽃(아크)을 감지,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발생 효과적 억제 가능
 - (자동확산형 소화기) 화재 감지 시 소화약재 자동 분사하여 1층 출입구 등 설치 시 효과

[그림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설비 예시



아크차단기



자동 확산형 소화기

-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중 필로티 구조의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원물량(A, 호)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지원단가(B, 백만원)	2.1	2.1	2.2	2.2	2.3	—
합계(C=A×B, 백만원)	12,473	12,722	12,976	13,236	13,501	64,908
국비(C×0.5, 백만원)	6,236	6,361	6,488	6,618	6,750	32,454
지방비(C×0.5, 백만원)	6,236	6,361	6,488	6,618	6,750	32,454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